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고령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고령군수 (문화유산과장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무통계담당 심사필

# 고령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21. . . .

제 출 자 : 고 령 군 수

## 1. 개정 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은 5년을 초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, 그 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「고령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10조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6. 12. 31까지 5년 연장

## 3. 개정안 : 붙임 참조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
라. 입법예고 결과 : 2021. 10. 05. ~ 10. 25. / 해당 없음

마. 규제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
바. 기타 참고사항

고령군 조례 제 호

## 고령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령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10조의2 전단 중 “2021. 12. 31”을 “2026. 12. 31.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조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제10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<u>2021. 12. 31</u> 까지로 한다.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.	제10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--- ----- ----- -- <u>2026. 12. 31.</u> ----- . --- ----- ----- ----- ----- .

< 소관 부서명 >

고령군 문화유산과	
연 락 처	054-950-6312